

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0. 11

(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 정 열

나. 제안사유

- 농업관련기관폐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내실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농지관리 및 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농지법 제47조(위원회의 구성) 및 동법시행령 제63조(위원의 정수 등)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그 동안 관련기관의 폐지 또는 통합됨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,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1”을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현행]

[별표 1]

농지관리위원 정수

구분 읍면별	계	읍면장 (위원 장)	농민대표위원 (행정리)		농업관련기관추천위원				
			임차인	임대인	농협	지도소	농조	통계 출장소	농진공사 군지부
계	357	13	158	156	13	13	2	1	1
화순	33	1	15	12	1	1	1	1	1
한천	23	1	10	10	1	1			
춘양	33	1	15	15	1	1			
청풍	20	1	9	8	1	1			
이양	32	1	15	14	1	1			
능주	21	1	11	6	1	1	1		
도곡	28	1	13	12	1	1			
도암	28	1	9	16	1	1			
이서	21	1	9	9	1	1			
북면	27	1	12	12	1	1			
동북	25	1	11	11	1	1			
남면	33	1	14	16	1	1			
동면	33	1	15	15	1	1			

[개정안]

[별표 1]

농지관리위원 정수

구분 읍면	계	읍면장 (위원장)	농민대표위원 (행정리)		농업관련기관추천위원		
			임차인	임대인	농협	농업 기술센터	농업 기반공사
계	355	13	158	156	13	13	2
화순	31	1	15	12	1	1	1
한천	23	1	10	10	1	1	
춘양	33	1	15	15	1	1	
청풍	20	1	9	8	1	1	
이양	32	1	15	14	1	1	
능주	21	1	11	6	1	1	1
도곡	28	1	13	12	1	1	
도암	28	1	9	16	1	1	
이서	21	1	9	9	1	1	
북면	27	1	12	12	1	1	
동북	25	1	11	11	1	1	
남면	33	1	14	16	1	1	
동면	33	1	15	15	1	1	